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6일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9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08호 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함(안 제13조 본문)
- 운영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08호 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함(안 제13조 본문)
- 운영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규정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하고 지원 범위를 신설 규정함으로써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